

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

제정 1998. 5.29 개정 2009. 6.24
개정 2001. 6. 1 개정 2016. 5. 4
개정 2005. 8.10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창업보육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센터의 임무는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센터에 입주한 자를 위해 종합상담서비스, 사업지원, 연구시설 및 장비사용, 공동사무기기 등을 지원하고 정부정책자금, 벤처캐피탈 등 자금·기술 등을 알선하는 것이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창업보육 :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 및 연구실 제공, 자금알선, 경영, 기술·세무에 관한 상담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목적으로 운영함을 말한다.
2. 입주자 : 센터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말한다.
3. 입주개시일 : 센터 임대차 계약서에 정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.
4. 졸업 : 센터 입주자가 보육사업 지원에 의하여 계획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자립기반이 구축되어 독립이 가능하게 되거나, 입주자의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.
5. 퇴거 :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입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.
6. 국가과학기술기반구축시설 : 포항가속기연구소, 나노기술집적센터 등 본 대학과 국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치한 연구시설로, 창업보육센터장이 국가과학기술기반구축시설로 인정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. (신설: 2009.6.24)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① 센터의 조직 및 기구는 별표와 같다.

② 센터장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④ 센터에는 창업지원담당을 둔다.

제 3 장 운 영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입주자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단, 국가과학기술기
술기반구축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.(개정:
2009.6.24)

②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삭제: 2001.6.1)

제 4 장 입주 및 시설이용

제7조(시설이용) 센터에 입주한 자(업체)는 본 대학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7조의2(입주신청 대상 등) ① 센터 입주 대상은 사업성 및 가능성을 보유한 예비창업
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업과 벤처기
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으로 한다.

② 대상과 모집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과학기술기반구축시설에 입주중인 기업이 창업보
육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
다.(신설: 2009.6.24.)

④ 제3항의 기업이 관리비 등 제반비용을 국가과학기술기반구축시설에 납부하고 있
는 경우 창업보육센터는 관리비 등 제반비용의 대학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.(신설:
2009.6.24)

제8조(입주신청/계약 등) ① 센터의 입주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(사업
계획서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, 계약체결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9조(입주기간) ① 센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의 ‘창업보
육센터 운영요령’에 따른다(입주기간 6월 이상, 3년 이내). 다만, 입주자의 졸업과
입주자가 독립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와 입주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입
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(개정: 2009.6.24.)

②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창업보육기금) 입주기업은 본 대학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‘포항공과대학교
발전기금 약정서’를 통해 주식(또는 현금 등)을 기부하여야 한다. (신설: 2016.5.4)

제11조(삭제: 2001.6.1)

제12조(중간평가) 센터는 입주자에 대한 행정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기업경영 현황 자료
2.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
3. 기타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

제 5 장 졸업 및 퇴거

제13조(졸업)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 시킬 수 있다.

1. 보육사업 지원에 의하여 계획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, 자립가능 단계에 도달하였을 경우
2.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
② 졸업자에게는 창업보육센터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14조(퇴거)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 시킬 수 있다.

1.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2. 기타 보육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센터 입주계약서와 상이할 경우
4. 소음 및 악취의 발생, 선량한 미풍양속의 저해 등으로 본 대학의 교육·연구활동에 피해를 주는 경우
5. 이 규정의 위반이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본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
6.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공실 운영시(신설 : 2009.6.24)

제 6 장 사후관리

제15조(졸업자지원) ① 센터 졸업자는 상호협의 하에 지원받을 수 있다.

② 타 지역으로 이전한 졸업기업 중 창업보육센터내 기술연구소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상호협의하에 입주할 수 있다.

③ 전 2항에 의한 입주기간은 제9조를 적용한다.

제16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(중소기업청), 신기술창업보육사업지원기관 운영지침(한국산업기술평가원) 등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5월 29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8월 1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6월 2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5월 4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(별 표)

창업보육센터의 조직 및 기구



설립당초의 센터장 및 운영위원

직 위	성 명	학 과	전 공	임 기
센터장	이 전 영	전자계산학과	전 자 계 산 학	1998.3.1~2000.2.29
	구 형 건	교 양 학 부 (수학과 겸직)	경제학·수학	〃
	장 수 영	산 업 공 학 과	산 업 공 학	〃
	허 중	재 료 금 속 학 과	재 료 공 학	〃
운영위원	남 광 희	전자전기공학과	전 기 공 학	〃
	이 시 우	화 학 공 학 과	화 학 공 학	〃
간 사	김 경 찬	창업지원담당	-	당연직